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접근성 제고 등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0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재난방송의 자막크기 확대, 음성안내·수어통역 병행(안 제40조)	3
2.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 관련(안 제40조의2)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0.

다. 회 부 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난방송등을 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하였음에도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극히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하여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고, 수도권에 발생한 재난에 비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 재난방송등 송출이 미흡하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등을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재난방송의 자막크기 확대, 음성안내·수어통역 병행(안 제40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시 자막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 등을 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재난방송 등) ①·② (생략)	제40조(재난방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 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할 것</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 제40조제1항1)은 지상파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송사업자(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2호), 위성방송사업자(제3호),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제5호)에 대하여,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동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난방송등을 할 때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해, 재난 상황 대응이 어려운 노약자나 시청각장애인 등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막크기 확대나 음성안내가 필수적인 재난유형이나 관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모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수어통역 제공은 방송사업자의 예산부족 등 현실적인 방송여건 개선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유료방송사 등에서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막크기 확대에 인한 시청 편의저해를 고려하여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크기 등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와 함께 **한국방송협회**는 재난방송 ‘자막크기’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행 「방송법」 제69조제8항²⁾ 및 「방송법 시행령」 제52조³⁾, 관련 고시⁴⁾나 방통위가 마련한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 등 현행 체계만으로도 자막이나 수어통역 등의 규정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음성안내의 의무화는 시청흐름 방해, 재난방송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도 훼손 우려, 수어통역 의무화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저해, 현장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임.

- 이와 함께 지역민방협회(자막크기 확대에는 찬성의견), 지역 MBC사장협의회, KBS, EBS, JTBC, 연합뉴스TV, YTN, 채널에이, MBN, TV조선, OBS경인TV, KNN 등에서도 반대의견

2)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4)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⑦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을 제출한 상황임.

- 종합해보면,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약자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동의 의견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방송협회 및 방송사업자들의 반대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제출안(의안번호 2201054)과 ‘재난방송등’의 대상에 비상계엄, 경비계엄을 추가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는 한국수어, 문자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미화의원안(의안번호 2206411)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으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 관련(안 제40조의2)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KBS)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나. 검토의견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⁵⁾는 KBS를 재난방송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정기적 모의 훈련 실시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KBS의 대응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후 53분이 지나서 재난 특보를 시작하는 등 KBS의 재난 방송 편성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⁶⁾

- 그러나 비교적 최근인 2025년 3월 경북·경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였던 당시에, 재난방송주관사인 KBS의 재난 관련 보도 편성시간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⁷⁾⁸⁾

○ 개정안은 대형 재난 발생상황에서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을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KTV국민방송,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주관방송사 책임강화」, 2019.5.15.

7)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또 지역차별인가,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산불 특별재난방송에 최선을 다해라”, 2025.3.26.

8) 지역방송협의회 성명서, “국지화되는 재난, 지역방송이 책임진다!“, 2025.4.11.

재난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하여 송출하도록 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이 면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법률에도 한국방송공사의 재난방송 송출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⁹⁾ 재난상황의 종료라는 개념이 모호하며, 재난 시 정부의 대응수준은 행정안전부가 판단하므로 개정안은 보도 및 특보 등 재난방송의 편성이 정부 판단에 귀속되어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또한 재난방송의 종료 시점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방송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제2항¹⁰⁾과 충돌할 여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를 종합하면, 재난방송등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이 면밀히 보호될 수 있도록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0)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의
반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
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